

CONTENTS

p.03	1. 예술활동증명
p.04	2. 신청절차
p.05	3. 신청 및 결과 확인
p.07	4. 신청방법
p.08	(1) 예술활동증명(일반) -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- 예술활동 수입 - 기준 외 활동 -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
p.13	(2)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
p.17	(3) 예술활동증명 특례
p.17	5. 갱신

예술활동증명

1

+ 예술활동증명이란? +

‘예술활동증명’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전에 먼저 마쳐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.
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
예술 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‘예술인 복지법’에 따른
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11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+ 예술 분야

문학 / 사진 / 건축 / 미술(미술일반, 디자인·공예, 전통미술) / 국악 / 무용 / 연극 /
음악(음악일반, 대중음악) / 영화 / 만화 / 연예(방송, 공연)

※ 2개 이상 예술분야 동시 활동의 경우, 최대 3개 분야까지 ‘복수’ 선택 가능

+ 예술 활동 유형

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및 기획

* 예외사항

: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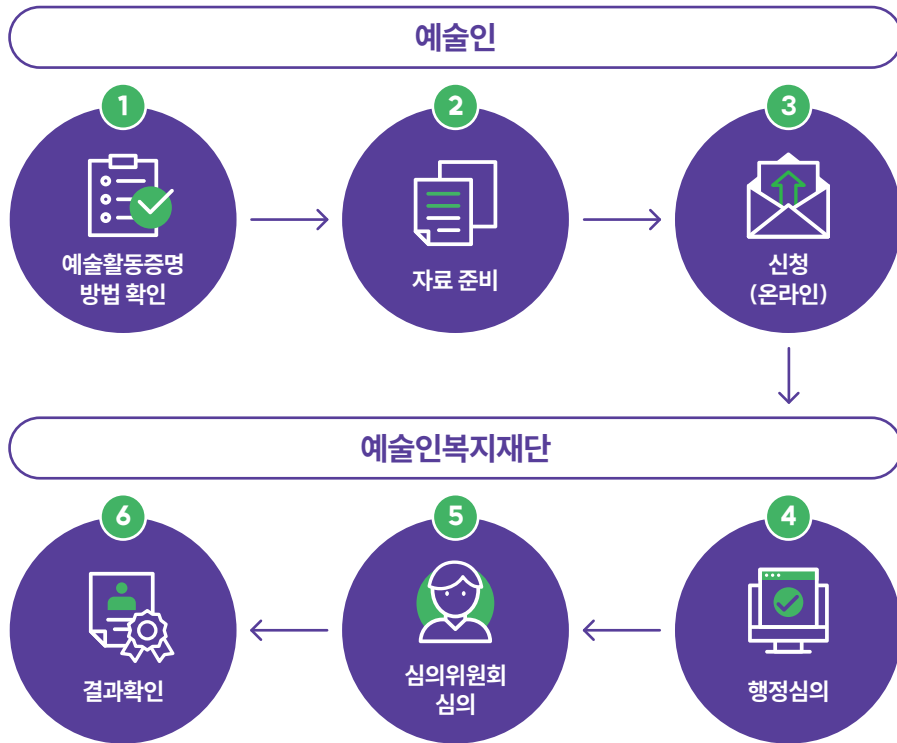
(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, 난민인정증명서 등)

* 자세한 내용은 <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> 제2조제4항을 참고

2

+ 예술활동증명, 어떻게 하나요? +

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을 해주세요. 각 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미완료 처리가 될 수 있으나, 꼭 예술활동증명 방법과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3

+ 신청 및 결과 확인 +

+ 온라인 신청

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| www.kawfartist.kr

회원가입 >> 본인인증 >> 예술활동증명 내용 입력 및 자료 첨부 >> 신청완료

- *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치시면 문자, 메일로 '신청완료'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- *마지막 단계 <신청하기>버튼을 눌러주셔야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.
- *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예술인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 및 신청 지원해드립니다.

전화 051-745-7236.239 (평일 9:00-18:00)

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-1(감만동)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

전화 02-3668-0200 (평일 9:00-18:00)

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

+ 결과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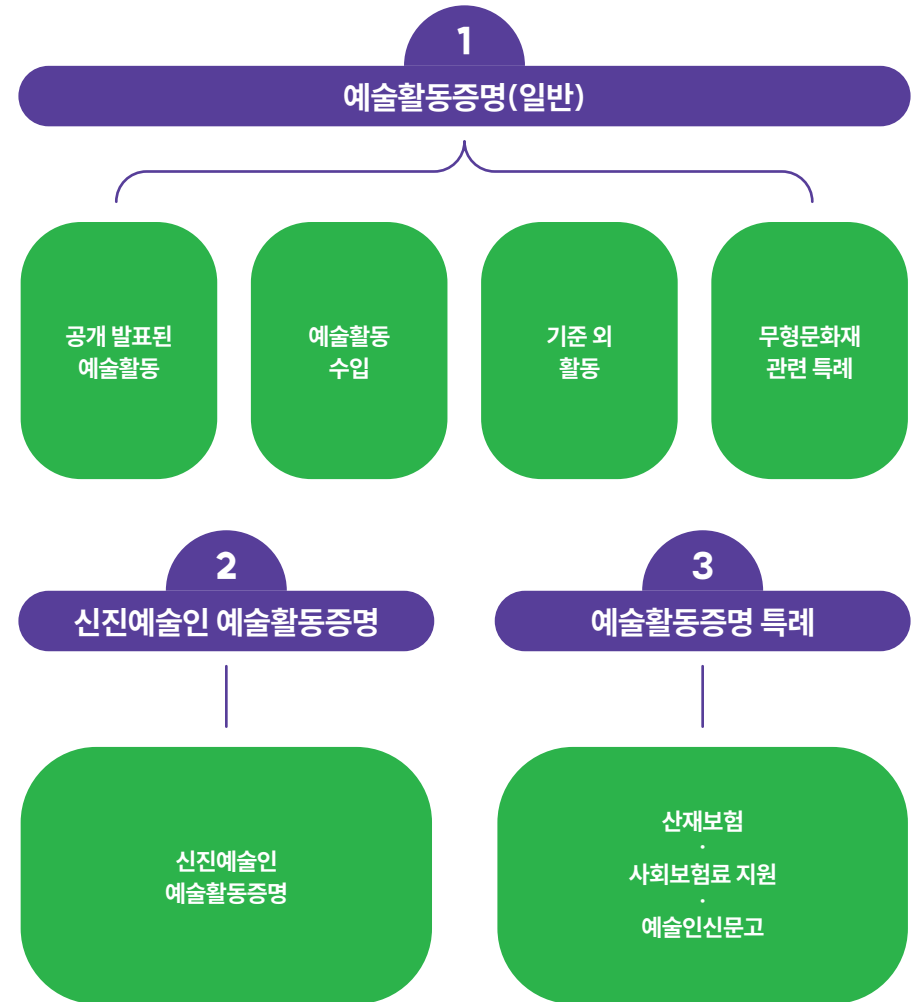
- 소요기간 3-4개월
- 결과 확인 문자, 전자우편 공지

- * '완료' 혹은 '미완료'로 결과 공지되며, 미완료 시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될 수 있으며, 심의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* 일시적인 통신장애로 결과 공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 시스템 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시시오.

+ 신청시 유의사항

- 학교(사설교육기관)내 예술활동, 학생이 대상인 예술활동은 직업 예술활동에 미포함 됩니다.
(예: 졸업전시회, 과 정기공연 등)
- 경연대회(공쿠르, 공모전), 봉사활동, 축제, 행사의 출연이나 기획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미포함 됩니다.
(단, 경연의 성격이 있으나 일정 수준을 전제한 공연의 출연은 전문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)
- 출판분야, 강의/교육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봉사활동, 축제,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문화재청의 확인(재단이 확인)을 통해 예술인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자료가 위 · 변조된 자료이거나 실적이 허위인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기간동안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예술인복지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.
- 예술인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· 회수 조치 될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+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(택1) +



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.
예술 분야, 직업별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.

+ '공개 발표된 예술활동' 기준

문학 | 최근 "5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인, 수필가 5편 이상의 시(시조, 동시 포함),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· 소설가 1편(단편의 경우 3편) 이상의 소설(동화 포함),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· 희곡작가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(*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) · 비평가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· 공통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를 부여 받은 서적 · 문예지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부여,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(문학)월간지,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·계간·반연간 종합 문예지/잡지, 장르별 문예지,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· 아동문학,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 순수 창작 저술 활동(위인전, 명작 재구성, 학습도서 미포함)이 추가 되고 교육·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, 등단 여부, 교양·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시는 3편 이상, 소설·수필 등 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) 등 2개 자료 제출

미술, 사진, 건축 | 최근 "5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작가 5회 이상 미술·사진·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,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· 비평가 5회 이상 미술·사진·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3년 3회(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 1회) 이상의 미술·사진·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·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를 부여받은 서적 · 1편 독립된 작품 * 건축분야 '시공'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리플릿 표지+내지 - 도록 표지+내지 - 작가명 및 전시작품 확인가능한 전시장 내 작품 사진(전시참여확인서(또는 계약서)로 대체 가능) 등 3개 자료 제출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) 등 2개 자료 제출

음악, 국악 | 최근 "3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창자, 연주자 아래 중 택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편 이상의 음악·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·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-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· 작사(곡), 편곡가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(곡)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·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· 비평가 3편 이상의 음악·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·국악 비평집 출간 · 지휘자 음악·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음악·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또는 1곡 독립된 작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일명칭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 독립된 다른 작품으로 인정 · 1장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(디지털 음반 포함,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유희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연(일반음악, 국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 - 리플릿(표지+내지) 등 2개 자료 제출 (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· 공연(대중음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(또는 리플릿(표지+내지)) - 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 등 2개 자료 제출 · 음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앨범발행 포털자료(URL 포함)(앨범커버, 발행정보, 크레딧 확인 필요) 자료 제출 (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) · 악곡(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트리밍서비스 저작권 확인 캡처본 및 URL 자료 제출 (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)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) 등 2개 자료 제출

무용 | 최근 "3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용수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· 안무가 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· 비평가 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,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* 경연대회(콩쿠르), 봉사활동, 축제, 행사 등의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연(무용수, 안무가,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 - 리플릿(표지+내지) 등 2개 자료 제출 (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* 안무가의 경우, 공연성격(세부장르)·공연규모·공연시간(런타임) 등이 확인되는 자료 제출 필요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) 등 2개 자료 제출

연극 | 최근 "3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기자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· 연출가 1편 이상 연극 공연 연출 · 극작가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· 비평가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,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* 학생 공연 지도, 작품 개발 단계의 낭독공연은 미인정 * 동일작품이라도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2편으로 인정,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편으로 인정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연(연기자, 연출가, 극작가,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 - 리플릿(표지+내지) 등 2개 자료 제출 (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* 장기공연 출연배우의 경우 장기 출연 확인(실제 참여한 회차 기재) 가능한 계약서 및 출연료 지급 통장 내역 첨부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 · 발행일 ·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) 등 2개 자료 제출

영화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기자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출연 · 연출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연출 (단편 영화의 경우 최근 3년) · 시나리오작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를 통해 발표 · 비평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· 극작가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5년 동안 2편 이상 영화 작품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「저작권법,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권 등에서 상영되거나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· 단편영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, 제2조제7호에 따라 40분이 넘지 않는 영화. 학생작품 참여 · 지도, 학교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.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화(연기자, 연출가, 시나리오작가, 극작가,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(참여)확인 가능 자료(포털영화검색자료 ·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·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ISNIKorea 등) 제출 (출연계약서(또는 출연(참여)확인서))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 · 발행일 ·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) 등 2개 자료 제출

연예 | 최근 "3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배우 · 개그맨 · MC · 프로듀서 등(다음 중 택 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에 출연한 자 -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 연출자 또는 진행자(드라마, 음악·코미디·예능·교양 프로그램 등) · 비평가 3편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비평집을 출간 · 패션모델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· 공연자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 · 작가 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·예능·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(*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)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-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독립된 작품을 말하며 동일명칭 공연·방송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 독립된 다른 작품으로 인정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예(공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 - 플릿(표지+내지) 등 2개 자료 제출 (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· 연예(방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(참여)확인 가능 자료(방송국 홈페이지 화면(URL주소 포함) (등급확인서(출연확인서)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제출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 · 발행일 ·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) 등 2개 자료 제출

만화 | 최근 "5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만화가 아래 중 택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,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-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· 비평가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자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자 / -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참여한 자 (* 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)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독립된 작품 ·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·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를 부여받은 서적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작품(만화, 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 · 발행일 ·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) 등 2개 자료 제출 · 연재 작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재정보(연재플랫폼 화면(URL주소 포함)) - 연재계약서(또는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입증빙자료) 등 2개 자료 제출 · 전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리플릿 표지+내지 / - 도록 - 작가명 및 전시작품 확인 가능한 자료(전시 현장 전경, 계약서(또는 확인서)) 등 3개 자료 제출

공통사항

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(확인서)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첨부
- 기획 및 기술지원으로 참여한 경우,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저작물 또는 저작물 공표에 상당한 예술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
- 제출자료는 가급적 이미지파일(JPG)로 제출
-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안 요청될 수 있음
- 언론매체 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출 시 URL 주소 포함하여 첨부

+ 예술활동 수입

최근 1년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,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360만원 이상 혹은 최근 3년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%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- **자료** : 수입 내역 및 관련 활동 자료 반드시 함께 접수

예술활동 확인자료

(작품명/발표연도/일시/신청자명/역할/주최주관 확인가능한) 계약서, 리플릿, 도록, 포스터, 프로그램북 등

+ 기준 외 활동

예술을 '업'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지만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 기준을 적용할 때 예술활동증명이 어려운 예술인(예. 원로예술인, 경력단절 예술인,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)을 위한 제도입니다.

- **자료**

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'공개 발표된 예술활동'에 해당하는 자료

+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

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,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·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한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

- **자료**

보유자, 전승교육사

① 문화재청 및 (광역)시·도에서 발급한 확인서류

이수자

① 문화재청 및 (광역)시·도에서 발급한 확인서류

②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자료(포스터, 리플릿, 계약서 등)

※ 보유자 후보자, 전수자는 인정하지 않음

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 활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

+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

문학 | 최근 "2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인, 수필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시(동시), 시조,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· 소설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소설(동화 포함),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·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예지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가 부여된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(문학)월간지,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·계간·반년간 종합 문예지·잡지, 장르별 문예지,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· 아동문학,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 순수 창작 저술 활동(위인전, 명작 재구성, 학습도서 미포함)이 주가 되고 교육·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, 등단 여부, 교양·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시는 3편 이상, 소설·수필 등 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) 등 2개 자료 제출

미술, 사진, 건축 | 최근 "2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작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·사진·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·사진·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·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·사진·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·사진·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(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)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·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를 부여 받은 서적 · 1편 독립된 작품 / 건축 분야 '시공'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리플릿 표지+내지 - 도록 표지+내지 - 작가명 및 전시작품 확인가능한 전시장 내 작품 사진(전시참여확인서(또는 계약서)로 대체 가능) 등 3개 자료 제출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) 등 2개 자료 제출

음악, 국악 | 최근 "2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세요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창자, 연주자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등에 출연 또는 1곡 이상의 음반 출반 · 작사(곡), 편곡가 최근 2년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(곡)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편 이상의 작품집 출간 · 지휘자 최근 2년동안 음악 국악 공연에서 1회이상 지휘 참여 · 비평가 최근 2년동안 음악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회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집을 출간 · 기획, 기술지원 스테프 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에 참여하였거나 1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또는 1곡 독립된 작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에만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 - 경연대회(콩쿠르), 봉사활동, 축제,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-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· 1장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(디지털 음반 포함,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희업소 공연은 미인정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연(일반음악, 국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 - 리플릿(표지+내지) 등 2개 자료 제출 (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· 공연(대중음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(또는 리플릿(표지+내지)) - 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 등 2개 자료 제출 · 음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앨범발행 포털자료(URL 포함)(앨범커버, 발행정보, 크레딧 확인 필요) 자료 제출 (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) · 악곡(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트리밍서비스 저작권 확인 캡처본 및 URL 자료 제출 (저작권 등록 자료로 대체 가능)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) 등 2개 자료 제출

무용 | 최근 "2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세요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용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·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· 기획, 기술지원 스테프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독립된 작품을 지칭하며,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연대회(콩쿠르), 봉사활동, 축제, 행사 등의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연(무용수, 기획 및 기술지원 스테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 - 리플릿(표지+내지) 등 2개 자료 제출 (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) 등 2개 자료 제출

연극 | 최근 "2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세요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기자 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· 비평가 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 · 기획, 기술지원 스테프 최근 2년동안 1편 이상 연극 공연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독립된 작품을 말하며 동일명칭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 독립된 다른 작품으로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생공연 참여·지도,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- 동일작품이라도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2편으로 인정,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편으로 인정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연(연기자, 기획 및 기술지원 스테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 - 리플릿(표지+내지) 등 2개 자료 제출 (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* 장기공연 출연배우의 경우 장기 출연 확인(실제 참여한 회차 기재) 가능한 계약서 및 출연료 지급 통장 내역 첨부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) 등 2개 자료 제출

영화 | 최근 "2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세요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기자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출연 ·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 · 기획, 기술지원 스테프 최근 2년동안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 영화 작품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「저작권법,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· 단편영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, 제2조제7호에 따라 40분이 넘지 않는 영화. 학생작품 참여·지도,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.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화(연기자, 기획 및 기술지원 스테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(참여)확인 가능 자료(포털영화검색자료·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·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·ISNikorea 등) 제출 (출연계약서(또는 출연(참여)확인서))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·발행일·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) 등 2개 자료 제출

연예 | 최근 "2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배우, 개그맨, MC, 프로듀서 등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에 출연한 자 · 패션모델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거나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· 공연자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 ·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독립된 작품을 지칭하며, 동일 명칭의 공연/방송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예(공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터 - 리플릿(표지+내지) 등 2개 자료 제출 (출연계약서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· 연예(방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(참여)확인 가능 자료(방송국 홈페이지 화면(URL 주소 포함) (등급확인서(출연확인서)+수입증빙자료(출연료 등)로 대체 가능) 제출 · 작품(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 · 발행일 ·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) 등 2개 자료 제출

만화 | 최근 "2년"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.

직업별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만화가 아래 중 택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-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·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·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아래 중 택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-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
세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 독립된 작품 ·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· 1권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를 부여 받은 서적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작품(만화, 비평)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+목차+발행정보면(발행처 · 발행일 · 국제표준자료번호(ISBN/ISSN) 등) - 작품 수록면(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췌) 등 2개 자료 제출 · 연재작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재정보(연재플랫폼 화면(URL 주소 포함)) - 연재계약서(또는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입증빙자료) 등 2개 자료 제출 · 전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리플릿 표지+내지 - 도록 - 작가명 및 전시작품 확인 가능한 자료(전시 현장 전경, 계약서(또는 확인서)) 등 3개 자료 제출

공통사항

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(확인서)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첨부
- 기획 및 기술지원으로 참여한 경우,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저작물 또는 저작물 공표에 상당한 예술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
- 제출자료는 가급적 이미지파일(JPG)로 제출
-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안 요청될 수 있음
- 언론매체 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출 시 URL 주소 포함하여 첨부

3

예술활동증명 특례

+ 산재보험 · 사회보험료 지원 · 예술인신문고

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, 산재보험 가입, 예술인 신문고 신고를 위한 특례 :

산재보험 가입,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, 예술인 신문고 등을 위해 관련 '서면 계약서' 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.

· **자료** ①~③ 항목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면계약서 제출)

- ① 예술활동 정보(주최 · 주관, 활동명, 활동(계약)기간, 계약금액, 계약금액 지급주체 등)
- ② 참여정보(신청자명(예명 포함), 신청자 역할)
- ③ 계약체결일 및 계약당사자 양측의 날인

※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청 전,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.
※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 해야함

갱신



+ 예술활동증명 갱신 +

직업 예술인으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갱신일(유효기간)이 설정되며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

더불어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.

예) 소설가로 2015년 1월 예술활동증명(공개발표된 예술활동)을 마친 경우 2020년 1월이 갱신일로 지정

(재)부산문화재단 2022-024호

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

bawsc.bscf.or.kr

051-745-7236,239

경력정보시스템

www.kawfartist.kr

02-3668-0200

부산문화재단

www.bscf.or.kr

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-1(감만동)

